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방재정 규모 성장과 함께 자치경험 축적과 지방분권 확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역량이 성숙해 오는 한편,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단순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형태로부터 민간투자 및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등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판단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필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민자 유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확대

- 1)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의 경우 종전에는 총사업비 기준 광역자치단체 30~4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3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함
- 2)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우발채무)의 경우 종전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

사 대상이었으나, 우발채무 규모 기준 광역자치단체 1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50억원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함
3) 일반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나,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
하는 공동·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함

나. 종전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가
면제되었으나, 투자심사가 면제되는 국비 비중 기준을 100분의 70 이
상으로 완화(안 별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을 “시·도의 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으로, “주체별 시·도의”를 “주체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30억원”을 각각 “3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마.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시·도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투자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로서 그 부담의 규

모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제41조제1항제2호다목 중 “3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4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도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로서 그 부담의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시·군”을 “시·군”으로, “투자심사 대상”을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중 “5억원”을 “6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
· 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로서 그 부담의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

제41조제2항제2호나목 중 “5억원 이상 30억원”을 “60억원 이상 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3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20억원”을 “6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걸쳐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군 및 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시·군 및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투자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로서 그 부담의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제41조제2항제3호다목 중 “3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따른 부담행위로서 그 부담의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군 및 자치구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별표 제20호 중 “국가수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5호 중 “80”을 “70”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u>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시·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u>시·도의 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u> ----- <u>주체별</u> ----- ----- --.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 -----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u>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u>	가. ----- ----- ----- ----- ----- - <u><단서 삭제></u>

다.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

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신 설>

<신 설>

나. ----- 300

억원 -----

다. ----- 300

억원 -----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

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

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

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

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

축사업

마. 2개 이상의 시·도에 걸

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

·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신 설>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

가.·나. (생 략)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
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
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
축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신 설>

“시·도 간 공동협력사업”
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
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투자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로서
그 부담의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2.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300억원 -----

라. -----

----- 300
억원 -----

마. 시·도 간 공동협력사업
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로서

<신 설>

2.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생략)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신 설>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로서 그 부담의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60억원 이상 200억원 -----

다. ----- 200억원 -----

라. -----

----- 60억원 -----

마.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걸쳐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군 및 자치구가 함께

<u><신 설></u>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나. (생략) 다. 총사업비 <u>30억원</u>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u>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u> <u><신 설></u> 마. (생략) ③·④ (생략)	<u>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시·군 및 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투자사업</u>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u>따른 부담행위로서 그 부담의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u> 3.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u>200억원</u> ----- ----- ----- 라. ----- --- <u>따른 부담행위로서 그 부담의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u> 마. <u>시·군 및 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u> 바. (현행 마목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715